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 현실 부합토록 경품고시 개정 및 시행

소비자 현상경품, 2천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7일 소비자 현상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가액의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경품가액 합계액의 한도를 예상 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하도록 경품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인식의 변화, 경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2005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고,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비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 대책에 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품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경품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품가액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품총액 한도를 예상 매출액의 1% 이내에서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상향한 것이다.

아울러, 경품의 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경품행사는 경품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경품한도 완화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3년 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경품고시 개정으로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를 확대하여 소비자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품한도 완화가 소비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시장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